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5. 10. 8.(목) 09:35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허원제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5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도 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전자 회의록 및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되지 않아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5-53-229)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및 제57조제4항에 따른 편성비율 산정기간,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 인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작년 11월 방송법 시행령 편성비율 산정기간이 ‘매월’에서 ‘매분기’로 개정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7월까지 애니메이션업계, 방송사 의견수렴을 총 4회 했습니다. 8월 6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8월 26일까지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사전 규제심사 결과는 ‘비규제’로 나왔습니다. 또한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와 방송사업자 의견수렴을 9월 7일, 9월 21일 두 차례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예고(안)에 대한 주요 제출 의견 및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월에서 매분기로 개선함과 관련해서는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편성 인정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한국애니메이션발전연대에서는 신규편성 인정 그룹을 종편과 애니메이션 전문PP로 구분하는 경우 종편이 수급할 수 있는 작품이 많아져 애니메이션의 단가하락이 예상되므로, 새로 제작된 작품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애니메이션발전연대는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애니메이션진흥협회 등 7개 협회로 구성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우수한 애니메이션의 유통 확대 등 제도 개선 취지와는 달리, 종합편성 채널이 애니PP가 기 방영했던 작품들 위주로 세 번째로 방영하는 경우에 애니메이션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 방영된 작품은 신규편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최근 제작된 작품이 신규편성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견 제출은 대원방송에서 제출했습니다. 제도 개선시 인기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매출만 증대된다는 점에서 애니메이션 산업 전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신규편성 대상 작품이 부족해져서 품질이 낮은 애니메이션까지 방영되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 우수 애니메이션의 노출기회 확대가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에 제도개선을 만들기 전에 한 간담회에서도 애니메이션 제작업계는 국내 애니메이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수라도 우수 애니메이션이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방송협회에서는 새벽시간에 애니메이션을 주로 편성하는 종편PP에게 추가적인 혜택까지 주는 것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산업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결과, 지금 방송평가에서 새벽시간대에 편성하는 사항은 평가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제도개선이 이미 되었고, 어린이 시청시간대에 방영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이미 제도개선이 됐으므로 이것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예고(안) 중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시 개정 이전에 애니메이션 전문PP가 기 방영했던 애니메이션 작품은 이후에도 신규편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칙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칙 제1조는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이고, 제2조로 신설되는 사항은 경과조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제4조제1항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편성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애니메이션을 방송사업자가 편성하는 경우 이를 신규편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관보 게재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방송평가에서 새벽시간대에 편성하는 사항은 제외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방송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어린이 프로그램은 제외되도록 규제를 신설했는데, 애니메이션도 그렇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애니메이션도 그렇게 됐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어린이가 볼 수 없는 새벽시간대에 편성하는 것은 못 하도록, 점수를 못 얻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 프로그램도 그렇게

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인 것은 맞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편성규제를 안 받을 것 같습니다.

○ 김종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새벽시간대 애니메이션 편성 자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어린이 프로그램 말고….

○ 김종영 편성평가정책과장

- 그런데 애니메이션라는 것이 주시청 대상이 어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 김재홍 부위원장

- 통상적인 것과 어린이 프로그램을 새벽시간대에 편성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한 것 말고, 애니메이션 전반적인 것을 새벽시간에 편성하는 것은 점수를 못 준다는 것이 있습니까? 따로 했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애니메이션은 새벽시간 편성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 김재홍 부위원장

- 따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어린이 프로그램은 편성 제한이 없는 것이지요?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을 해 놓았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어린이가 볼 수 없는 새벽시간대에 편성하면 평가점수를 받지 않게 규제를 새로이 해 놓았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2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만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여쭙보신 것 같습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애니메이션을 따로 시간대 규제를 안 한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해서 해야 합니다.

○ 김종영 편성평가정책과장

-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취지도 방송평가 대상에서 애니메이션 새벽 편성을 제외하는 것에 이의 없으시지요?

○ 김재홍 부위원장

- 예.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추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새벽시간 대에 편성되는 어린이 프로그램과 애니메이션도 방송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데, 고시개정안에 대해 법제처의 심사를 받은 것은 아니지요? 받았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이것은 총리실 규제심사 대상이 되면 법제처의 심사를 받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문구에 대한 심사를 받았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문구 자체의 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읽어보니까 의미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제4조제1항에 보면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 내의 방송사업자 중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최초로 편성하는 경우 이를 신규편성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 내의 방송사업자 중에서, 제가 지금 읽은 개정안 제4조제1항 본문을 한 번 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문구를 빼고 설명하지 말고, 문구를 가지고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지금 그룹을 1, 2, 3 각호 3개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호에 있는 방송사업자가 1호 내 방송사업자들 중에서 최초로 편성하는 경우입니다. 1호는 지상파인데 지상파 KBS, MBC, SBS, EBS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최초로 편성하는 경우 신규편성으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이 문구가 의미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을 이렇게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기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제4조제1항에 보면 앞에 ‘방송사업자’라는 주어도 있고, 그다음 각호에 ‘방송사업자’ 중에서 이렇게 ‘방송사업자’라는 동일한 단어가 나란히 나오니까 처음 읽는 사람이 그 뜻을 쉽게 알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방송사업자군 중에서’라고 해서 ‘군’자를 하나 집어넣든지, 1, 2, 3호는 그룹이지 않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각각의 방송사업자가 아니고 방송사업자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그룹을 말하는 것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앞에 방송사업자가 개별방송사업자이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표현을 만들면 이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방송사업자가 이러한 방송사업자 중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최초로 편성하는 경우…, ‘편성하는 경우’의 주어는 앞에 방송사업자입니까? 주어가 다음 각호 내의 방송사업자가 되는 것입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처음 방송사업자가 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를 들면 TV조선이 한 번 방송했던 것이라도 KBS가 지상파방송사업자군 내에서 처음으로 하면 그것을 신규로 봐 준다, 그런 의미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 이기주 상임위원

-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니까 의미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제1호를 지상파방송사업자군, 제2호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군 해서 1, 2, 3이 그룹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고, 그다음에 본문에서는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방송사업자군 중에서 제일 먼저 편성 하면 이것을 신규편성으로 봐 준다, 그러면 조금 의미 나아지지 않을까…,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현행 규정은 읽으면 의미전달이 분명히 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주어와 목적절이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렇게 하지요. 의미는 모두 이의가 없으시고…, 일부 자구를 수정해서 일반인들이 이 문구를 봤을 때 그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지 않을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취지에는 이의가 없으니까 오늘 의결을 하고, 이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맡겨 주시면 제가 해당 국과 상의를 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수정 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렇게 하시지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제4조의 문구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최근 방송통신 결합상품 활성화에 따라 특정상품을 무료화 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지난 5월에는 사실조사를 통해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지행위로 고시가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어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경과로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도 거쳤습니다. 가이드라인 안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목적은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에서 정한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예시를 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함이며, 다음 쪽을 보시면 적용대상은 전기통신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그다음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그 대리점 및 판매점이며, 적용범위는 결합상품의 주요내용에 대해 부당하게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의 세부 금지행위 유형 및 사업자의 자율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형별 세부 금지행위가 되겠습니다. 먼저 허위광고는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최대’, ‘최고’, ‘제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특정 구성 상품의 이용요금을 ‘공짜’, ‘무료’ 및 ‘0원’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그리고 ‘기존 통신사 위약금 100% 해결’ 등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장광고는 기간·다량·결합 할인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최대 136만원 혜택’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실제 지급금액이 아니라 최대 지급가능 금액을 모든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그리고 요금 할인액 전체를 경품에 포함해서 경품 혜택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만광고로 요금할인, 경품지급 등 혜택만 표시하고 광고하는 행위, 그다음에 이용조건 등 중요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아니하고 광고하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율 조치로서 사업자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세부적으로 구체화한 자체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대리점 및 판매점의 온·오프라인 광고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점검하거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곧바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안)의 전문은 <붙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기에 가이드라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예시 같습니다. 사실 예시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허위광고다, 과장광고다, 기만광고다, 사전적 의미의 내용만 가지고는 어느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예시를 해 놓은 것이 이 가이드라인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시가 시장 상황, 또는 사업자들이 어떤 문구나 리플릿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시장조사, 사실조사를 통해서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이 가이드라인은 당분간이라도 시장에서 실제 사업자들이 광고하는 내용들을 봐 가면서 계속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합판매에 있어서의 허위·과장 광고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 중의 하나로 유형 및 기준에 허위·과장광고가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기억이 분명하지 않아서 물어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는 없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허위·과장광고는 결합판매에 있어서만 이렇게 위반행위 유형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결합판매 말고 다른 개별 서비스에 있어서 허위·과장광고가 요즘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듯 하지만 최근에 통신사간에 소송을 취하한 건을 보면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 서로 경쟁적으로 광고를 하다 보면 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방통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인지 늘 광고와 관련해서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이 있어서 이번 건도 아마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저는 결합판매에 있어서 허위·과장광고 문제를 이번에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금지행위로 일반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공정위와의 그런 문제가 과거부터 계속 있기는 있었는데 결합판매에 있어서, 방송통신시장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추적 해 가면 그것을 좀 더 다른 방송통신 서비스로 일반화 내지는 확대

하는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 전에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그 부분이 전혀 공백상태는 아니고, 시행령 <별표 4>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 제5호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 중 나목의 제4호에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제정하고자 하는 고시에 있는 것보다 범위가 적을 수는 있지요.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위 과장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허위와 기만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에, 그런데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과장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지행위 자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쫓 추적해 온 사례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명확하게 또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때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하고, 우리가 만든 허위·과장·기만 광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그 문구를 잘 정리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국감 기간 동안 시대착오적이고 극단적인 이념 편향적 발언으로 충격과 분노 그리고 서글픔을 동시에 안겨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망언, 망동사태에 대해 인사권자인 방통위 원으로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국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언론의 관심과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방통위원들이 귀를 막고 입을 닫고 있는 것이 무의미하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방통위원 개인 자격으로 이런 분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 이사로 임명하고 그로 인해 방문진을 책임지는 이사장에 호선되도록 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일 것도 없고 더 나올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영주 이사장의 망언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와 오늘 나온 주요 일간지 사설 제목만 보더라도 고영주 이사장의 망언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발언이다' 이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사설 제목과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은 '열린 사회와 그 적들 - 민주주의 모독하는 시대 부적응자' 제목 하에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빨갱이라고 낙인찍는 행태야말로 보수세력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다. 모름지기 품격 있는 보수정권이라면 최소한의 상식과 지성을 갖춘 정상적 보수인사를 기용해서 국가를 운영해야 옳다.' 한마디로 정상적이지 못한 인사를 해서 문제를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세계일보는 '방문진 이사장의 편향 발언은 백해무익하다. 정치적 반대자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이런 말에 담긴 의미를 몰랐다면 공직자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 그랬다면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절타를 받아 마땅하다. 그는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고 이사장은 논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공산주의자 타령만 하는 고 이사장 해임이 마땅하다. 고 이사장 체제가 지속될 경우 방문진이 사상 최악의 친여 기구라는 비판과 함께 폐지 여론에 직면할 것이 뻔하다. 방송문화 발전과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고 이사장을 즉각 해임해야 된다', 한국일보는 '극단적 사고로는 방문진 이사장 자격이 없다. 누가 이런 인사를 임명했는지 반드시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고 이사장을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끌어안고 가는 것은 더 큰 부담이다. 이런 인사의 거취 문제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너무 소모적이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일제히 사설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입장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고영주 이사장의 망언, 망동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그를 방문진 이사에 임명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습니다. 인사권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잘못된 인사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고영주 이사장은 자제력과 판단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문제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합리적 이성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이사장 본인을 위해서나 MBC를 위해 그리고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하루빨리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 또는 자진 사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언론과 시민단체는 물론 서울변호사협회나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사퇴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중 국회의 지적 등을 고려해서 내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 고영주 망언, 망동 사태를 계기로 공영방송 이사와 인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는 물론 방통위의 해임권을 명확히 하는 것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평가를 비롯한 관리감독

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논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해임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임명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그것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과거에 해임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우선 법률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사이에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원하시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위원장을 맡은 후 첫 전체회의인데 국회 국감장에서도 부위원장은 정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할까 합니다. 정파적인 입장을 떠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오늘 방문진 이사장 고영주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결코 정파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직무 결정의 결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국회 미방위 국감장이 온통 ‘고영주 국감이나’ 하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올 만큼 저는 그런 국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국감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입장을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들께서는 문제제기 지적을 안 하고 다른 말씀을 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지난번 MBC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감 때도 나온 질의와 답변을 봤을 때 충분히 그 지적과 비판을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읽었습니다. 저는 우선 먼저 고영주 이사장의 문제점은 방송 언론사의 최고 의결기구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의 기본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말하자면 사회 환경 감시와 정치적 비판이 언론의 본령 아니겠습니까? 저는 언론인 출신입니다. 정치언론학을 강의했던 교수 출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좌경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과연 방송언론사의 최고 의결기구 수장으로서 맞겠느냐 하는 것이고, 6일 국감장에서 고영주 이사장은 자신이 공안 전문가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지난 2일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에서는 여기에는 당시 허원제 부위원장께서 참석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자신이 방송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의원의 질문이 “고 이사장 본인이 방송이나 문화에 전문성이 있느냐?”고 질문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방송 전문가는 MBC 방송사에 있으면 족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건전한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방송 전문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그것은 방문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방문진 이사의 추천 요건,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의 전문성입니다. KBS 이사 요건과는 다르게 분명하게 방송의 전문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KBS 이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KBS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진 이사 선임할 때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어긋나게 했다는 점을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MBC가 공영방송 중의 하나인데 과거 불행했던 시절, 군사 독재정권 아래에서 오랫동안 공안검사를 했던 그 공안검사의 관점과 시각으로 방송언론, 공영방송을 경영할 것이냐? 그러면 공영방송을 공안방송으로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은 정말 누구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몇 차례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대로 드러났고, 본인이 아주 강한 소신과 확신을

밝혀서 우려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수행한 직무, 인선 이것은 정말 고쳐야 한다, 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임명권만 규정이 되어 있지, 해임권이 법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날도 야당 정호준 의원이 요새 국회의원들 공부를 많이 하고 자료를 많이 수집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임명권에 해임권이 수반된다는 것을 주장했고, 거기에 확실한 뒷받침이 되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그 뒤에 자료를 빼 봤습니다. 2012년 2월 24일자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정연주 前 KBS 사장의 해임 무효소송 최종 판결문입니다. 이 내용은 다 읽으려면 시간이 안 됩니다만 무효라는 것은 해임권이 정당하지 않을 때 무효이다, 그런데 비록 해임권이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임명권에는 해임권이 수반되기 때문에 해임 무효는 아니고 법적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본인에게 사전고지 같은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말하자면 법에 명시적으로 해임권이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임명권자가 이렇게 문제가 크게 야기된, 국가 안이 전체 시끄러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임명권자인 우리가 해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냥 지나가면 물론 언론, 밖에 시민단체, 나중에는 국회에서 임명권자에게 화살이 돌아갈 것입니다. 저의 직무유기이고 책임을 방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가적인, 사회적인 에너지 소모와 낭비가 더 가지 않도록 빨리 우리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임사유는 명백한 것입니다. 그냥 너무 극단주의자라든가 너무 우경..., 옛날 공안검사의 시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방송문화진흥회법상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의 전문성에 대해서 이분은 맞지 않고 자신이 그렇다고 자인한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얼른 해임안을 준비해서 이 소모적인 논쟁을 우리가 정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저께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방문진 이사장님의 질의답변을 저도 꼭 봐서 저 개인적으로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저는 방통위에서 방문진 이사장의 과거 경력이나 발언 내용, 그리고 최근에 국회에서의 발언내용을 가지고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적절하다, 아니다, 사퇴, 해임 이런 이야기를 현 시점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과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간단히 저와 견해가 다른 것을 말씀드리면, 첫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섯 분의 위원들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분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을지는 몰라도 임명 과정에서 위원들 간의 협의 절차 그리고 과거의 관행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지켜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임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임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법에 보면 해임도 일종의 징계이고, 다 구체적인 사유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보면 결격사유 외에는 해임이나 기타 징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경우에 해임에 해당이 되고 그 절차는 어떻게 하고 이런 규정들이 전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해임 문제를 우리 방통위에서 다룰 수 있느냐? 아주 곤란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또 하나 자진사퇴를 말씀하시는데 자진사퇴라는 것은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이지, 우리 방통위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논란 속에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거론되기는 했지만 과거부터 방문진이든 KBS든 EBS든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정말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을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방통위 안팎에서 논의하는 것 그 자체를 어떻게 못 하게 하고, 아니면 반대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논의결과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적어도 방통위 안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논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차후에 그런 논의의 필요성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저희 방통위 내에서 그런 논의를 계속 한다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을 다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자칫 정쟁의 연장선상으로 보이거나 또는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담감보다는 지금 고영주 이사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이것을 현 상태에서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그분이 했던 발언이나 그분의 생각, 그다음에 사회관이나 역사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해서 개선을 시키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여당의 한 의원님께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개인이 어떤 자유인의 자격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때 정치적 소신이나 주관을 강력하게 피력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인의 자리에 있고 공인의 신분에 있다면 이러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은 결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분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생각을 가지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희가 직접 확인국감에서 경험했다시피 그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 자리에서 했던 발언이나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태도로 인해서 이미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시는데, 가장 큰 결격사유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문진의 공적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을 보면 “방문진은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방문진의 설립취지를 구현할 수 없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결격사유가 있는가? 저는 오히려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미 드러난 그분의 생각이나 언행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을 고려한다면 그분은 더 이상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대단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다.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저는 그분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 준다면 우리 사회가 그리고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가 무엇입니까? 비정상의 정상

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그 언행을 보면 그나마 남아 있는 정상적인 부분도 비정상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더 이상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고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문화진흥회의 설립 취지와 역할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이사가 방송문화진흥회 업무나 또는 설립 취지와 관계되는 것이 아닌 다른 부분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을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그런 설립 취지를 제대로 구현 못할 것이다, 업무를 제대로 못할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사장은 이사장이라고 해서 다른 이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사회 회의의 주재하고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대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이사 한 사람의 일반 사회현상에 대한 생각을 문제 삼아서 그것을 해임의 사유로 삼는다면 이렇게 하자 치면 이사장 개개인이 모두 다 사회현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서 소위 일반상식을 조금 벗어난 사람은 다 부적격하다고 극단적으로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송에 관한 전문성 부분도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라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질문에 "방송에 관한 전문성이 없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미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를 3년 하시면서 방송문화진흥회의 업무라든지 또는 최대주주로 있는 MBC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분이라고 또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제 말씀 뒤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께서서는 "이사장도 9명의 이사 가운데 1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사회를 주재하는 권한 외에 특별한 권한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전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명의 이사 가운데 방문진 이사장은 유일한 상근직입니다. 또 상근직에 상응하는 급여라든가 예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10명이 넘는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처의 직원들을 데리고서 일상적으로 MBC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업무와 관계없는 그러한 발언으로 지금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지만 지난 확인

국감에서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만 왜 그것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이야말로 사회적·정치적·문화적·경제적 이러한 이슈들을 다 다루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방문진 이사장이 어떠한 사회관을 가지고 있느냐? 역사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야말로 업무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분은 중요한 흠결이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는 제가 생각을 달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기에서 논쟁할 것은 아니고 일단 각자의 의견은 그 정도 말씀하신 것으로 마무리를...,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마지막으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 위원님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관련해서 묻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8조에 나와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와 어떤 특정인이 이사 내지는 이사장으로서 직분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결국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방통위의 각 위원님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영역입니다. 그리고 법에 정한 결격사유는 객관적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꾸 전자와 후자를 같이 생각해서 이분은 이러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결격이다, 이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서 어떤 분이 이사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제8조에서 정한 객관적인 결격에 해당이 안 되면서 자기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은 제3자가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자꾸 객관적인 결격사유와 같이 동일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회 기능,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방문진에서 새로운 이사진들이 출범해서 방문진의 직무, 제5조에 나와 있는 업무와 제10조의 이사회 기능을 어떤 것을..., 시작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직무나 이사회 기능을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사전적으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들이 이러한 법에 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적절하다',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는 앞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그런 법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미 '결격이다', '아니다' 이런 말 자체가 너무 선부른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영주 이사장이 이미 직무를 시작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하는 것이 공영방송 경영기구 이사장의 중요한 직무입니다. 거기에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그 자리에서 본인이 본인

자신에 대해서 또 확인해 주고 자인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안 전문가임을 스스로 여러 차례 강조했고, 공안검사 시절의 경험과 그것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자인했습니다. 전문성에 대해서 예컨대 어느 방송사의 감사를 지냈는데 변호사나 회계사가 어느 방송 경영기구의 감사를 지낸 것이 방송 전문성이나? 그러면 회계책임자, 경리책임자를 어느 방송사에서 했으면 그것이 방송의 전문성으로 인정받아야 하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의 전문성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고려하여'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임의규정이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법에 명시된 것은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그 2가지는 KBS 이사 후보와는 다르게 방문진 이사 선임에서는 지켜져야 할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문성을 자신이 부인했다고 해서 우리 사무처가 만든 자료에도 '스스로를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곤란한 답변자료입니다. 지금 누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보겠습니까? 저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소신을 있는 그대로 120%, 150% 와서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이지, 자신을 낮추거나 겸손하게 발언했다? 이렇게 가면 방통위가 곤란합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만 뒤따라가면서 처방하지 말고 일이 더 확대되어서 나중에 코너에 몰려서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앞서서 하는 것이 우리의 정치·사회적 소모를 줄이고 우리의 책무를 다 하는 것이다, 여러 번 강조를 안 할 수 없어서 우리가 가진 임명권과 함께 해임권을 지금은 행사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허원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허원제 상임위원

- 우선 방문진 이사의 그동안 선임 과정은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 모두가 투표행위를 통해서 선출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성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선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름대로 다 판단을 하고 그 속에 그것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자기가 전문성이 있다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생각이겠지요. 그것이 겸손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동안 방문진 이사장을 어느 어느 분이 하셨는가? 또 방문진 이사를 어느 어느 분이 하셨는가? 그런 것을 다 보시면 사회 각계 각 분야의 출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을 놓고서 당신이 과연 방송의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묻는다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그 판단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임명에 관해서 우리가 과연 해임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해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이야기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과 관해서로는 그때도 분명히 과연 임명이 해임을 같이 포함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요. 원래 당초에 임면권이라고 되어 있던 규정을 임명권으로 이렇게 개정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KBS 사장의 경우에는 임명에는 임면이라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도 굉장히 강하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정연주 사장이 물러난 것은 법에 따라서 KBS 사장은 KBS 경영에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KBS 사장의 경영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명히 정부의 중앙행정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관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에게 언론사 이사들에 대한 선임권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은 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임까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선임이 되어서 언론사의 이사로서 또는 언론사의 경영의 책임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방통위가 나서서 그분들의 해임, 그분들의 인사상의 거취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결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법이나 방송문화진흥회법에 해임이라고 하는 것을 넣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언론사와 관련된 중요한 임원들이나 그 경영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언론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행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저는 그 조항을 아예 법에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이것은 인정할 수 있는 것, 우리 위원회의 정치적 판단이나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사람을 재단하지 않고 정해진 그 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결격사유를 둔 것입니다. 그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것은 누구든지 거기에 의해서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기 임명이 된, 선임이 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서, 정부가 그 부분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감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저는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 아시다시피 국회는 우리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 국회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이 열려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얼마든지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정치적인 견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임이니 이런 아주 민감한 사안, 특히 언론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영주 이사장이 본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본인의 국가관이나 안보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도 인정하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을 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부분, 또 과거에 그렇게 이야기해 왔던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인정을 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것은 다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앞으로 공영방송 이사장으로서 수행하는 데에 뭔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국감장에서 개인적으로는 고영주 이사장이 생각하는 부분에 관해서 일부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각자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는 이상 누구든지 똑같은 생각을 우리 만인이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국감장에서 제가 듣고 느낀 것은 고영주 이사장이 계속 주장하시는 부분이 나름대로 국가의 안녕, 질서, 소위 우리가 공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야에 워낙 오래 종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나름대로의 경험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아직 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특별히 깊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더 설명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고영주 이사장에 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더라도 우리 위원회

에서 공영방송 이사장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국회에서 특히 미방위 위원들이 해임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발표할 경우에 그 해임촉구 결의안은 어디에서 책임 지고 부응해야 하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제가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는 저희가 실시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법조인이시니까 대법원 판례는 실정법과 같은 효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모든 사안이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사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의 결론은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검토해야 할 부분 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사장이나 이사장 해임에 관한 문제인데, 이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임명권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임권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연주 前 사장이 청구한 해임무효가 아니고 해임취소라고 판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까지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책무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단위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국회에서 해임촉구 결의안이 나오면 어디에서 거기에 부응해야 합니까? 임명권자인 우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럴만한 법적 근거도 대법원 판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공안전문가 과거에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방송, 문화 이런데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안전문가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답변하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문화에 전혀 맞지 않는 분을 우리가 공영방송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이사로 임명한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공안방송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방지할 것입니까? 우리의 법적 권한도 있고, 책무를 빨리 다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것으로 우리 사회가 시끄러워지거나 소모적인 논란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입장을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난 6일 종합감사 때 물론 고영주 이사장이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말씀 중에 방송 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그런 생각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서 본인의 업무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논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우선 법률적인 검토부터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허원제 상임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임 부분에 관해서 이것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방통위가 해임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특별히 해임이라고 하는 조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추후에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것이 발견되거나 또는 추후에 결격사유가 발생이 되면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이라는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려면요?

○ 최성준 위원장

- 본인이 물러나지 않더라도 후임 인사를 선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 허원제 상임위원

- 자격이 자동으로….

○ 최성준 위원장

- 예, 상실됩니다. 당연 퇴직, 그 케이스가 2008년도에 KBS 신태석 이사 때 그 당시 안전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당연 퇴직으로 해서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 허원제 상임위원

- 그러면 그때 본인이 어떤 의사표시를 했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의사표시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퇴직되는 것이지요.

○ 허원제 상임위원

-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냥 자동 퇴직된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그래서 그분이 소송을 내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무런 처분을 안 했기 때문에 새로 이사를 선임한 것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그것이 무효거나 또는 취소라는 소송을 했었습니다.

○ 허원제 상임위원

- 해임과 관련해서 저는 일단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자동으로 퇴직이 되는 그 시스템이 우리 공영방송의 임원진에 대한 선임에는 적절한 것이 아닌가? 또 그것이 어떻게 해임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대법원의 판례에서 나온 임명권에는 임명 행위와 함께 해임의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해임에 우리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을 경우에 어쨌든 우리 방통위가 자동으로 퇴직을 하든 어떻게 되든 방통위로서는 그분에 대해서 해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의 해임이지, 우리 방통위가 새로운 법에 규정되지 않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사직을 해임시키는 것, 그렇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사들을 방통위가 해임을 하겠습니까? 사안 사안마다 들고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언론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언론의 자유, 편성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보호할 충분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해임, 언론사의 해임을 정부가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다양한 의견을 다 주셨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하나만 더요.

○ 최성준 위원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언론사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에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 영역은 보도와 편성, 편집이고, 언론사의 경영은 본질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아닙니다. 다릅니다. 언론사 경영진이 조세 포탈하면 세무조사하고, 그러면 그것이 언론탄압이냐? 그것은 당연한, 정당한 세무조사입니다. 기자, PD, 보도본부, 제작본부에 취재기사 작성, 편성, 편집, 프로그램 제작 말고 언론사의 경영은 본질적으로 언론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경영의 자유일지 모르지만 언론의 자유는 아니다 하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사장은 다름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다시 또 논의할 필요도 있을지 모릅니다. 한 걸음 떨어져 있는, 더군다나 경영기구의 이사장은 언론의 자유라는 보호막에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경영책임자이지, 언론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법행위가 있으면.... 또 반드시 우리가 법적 결격사유가 아닌 한 다 할 수 있다, 추천하면 다 해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회적 문제, 방송사 경영기구 수장

으로서의 부적합성, 본인의 철학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이것은 너무 맞지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와 상관없이 임명권자로서 해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문화진흥회를 언론과는 무관하게 경영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대상자 개개인의 생각이 또 경영과 관련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10월 15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53분 폐회 】